

광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0나646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의 상속재산 파산관재인 변호
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백준홍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나성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록영
변 론 종 결 2022. 3. 3.
판 결 선 고 2022. 4. 7.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20가단11921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파산자 C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6. 21. 접수 제86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파산자 C의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6. 21. 접수 제864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법원에서 원고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민법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한 부인의 소로 변경함으로써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의 채무초과 상태

1) C의 채무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에 2015. 8. 3.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고 2016. 3. 30.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 대출금'이라 한다)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위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하였다. 위 각 대출금의 변제가 연체됨에 따라 이 사건 제1 대출금의 보증인 기술보증기금은 2020. 7. 10. A에 이 사건 제1 대출금과 이자 중 259,417,70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2020. 7. 1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출금 중 잔여채무는 48,640,626원이고, 이 사건 제2 대출금 중 잔여 채무는 93,650,852원이다.

나) A은 2015. 10. 15. C에게 347,000,000원을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하고, C 및 배우자인 피고가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C의 1/2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16,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020. 12. 기준 위 대출금 채무의 액수는 305,158,504원이다.

다) A의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채권을 포함하여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제출된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액수는 합계 812,817,233원(= 잔존 원금 792,041,861원 + 잔존 이자 및 지연손해금 20,775,372원)이다.

2) C의 자산

가) C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은 2019년 아파트실거래가 조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256,500,000원{=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 거래액 513,000,000원[= (520,000,000원 + 520,000,000원 + 537,000,000원 + 495,000,000원 + 500,000,000원 + 505,000,000원) ÷ 6건] × 1/2 지분}이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이외에 거제시 F 전 1279㎡의 1261/1279 지분과 G 전 426㎡를 소유하고 있다. 같은 리에서 2019년에 거래된 지목이 전인 토지의 평균 거래가인 218,634원/㎡{= [(145,000,000원 ÷ 1,278㎡) + (135,000,000원 ÷ 1,131㎡) + (1,567,600,000원 ÷ 3,145㎡) + (200,000,000원 ÷ 477㎡) + (20,000,000원 ÷ 225㎡) + (44,000,000원 ÷ 608㎡)] ÷ 거래사례의 수 6건}을 기준으로 C의 위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면 368,835,558원{= 218,634원/㎡ × (1,261㎡ + 426㎡)}이다.

나. C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증여

C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9. 6. 21.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6. 21. 접수 제864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A의 사해행위취소 소송

A은 C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7.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C의 파산 및 사망

1) C은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C은 2021. 11. 30. 사망하였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C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항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가 포함되고(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에 그 행위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이 감소하거나 다른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위 인정사실 가1)다)항 기재 채무 중 2020. 5. 22. 발생한 주식회사 H에 대한 채무 10,148,319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대부분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채무들인 사실,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매출액은 2018년 상반기부터 감소 추세였고 이 사건 증여 무렵인 2019년 하반기의 매출액은 종전에 비하여 상당히 급감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그와 같이 자신의 자산의 가액을 상당히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신이 근보증을

한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D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자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가 C의 A에 대한 근보증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원리금인 월 1,40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1/2 지분을 이전받았던 것이므로 C의 사해행위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¹⁾.

2)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C의 전반적인 자산과 채무 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부동산의 대출원리금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는 대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흔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례적인 거래이고 피고로서는 C이 대출원리금 월 1,400,000원을 스스로 변제하지 못하고 피고로 하여금

대신 변제를 하도록 제의하였던 사정을 통하여 C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구소인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 판사 김진만, 판사 유상호, 판사 송인경

부 동 산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용인시 수지구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트러스지붕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용인시 수지구 대14274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9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62.259㎡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142740분의 103.03

1) 피고는 소송수계 전 원고였던 주식회사 A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보전채권 여부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상 피고의 위 피보전채권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